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시 보

제2552호

2026년 10월 2일 (금)

차 례

입 법 예 고

○ 파주시 공고 제2026-2572호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1
○ 파주시 공고 제2026-2577호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····· 2
○ 파주시 공고 제2026-2578호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·· 3
○ 파주시 공고 제2026-2582호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4
○ 파주시 공고 제2026-2587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····· 6
○ 파주시 공고 제2026-2589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··· 7
○ 파주시 공고 제2026-2591호 파주시 군부대 교류·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8
○ 파주시 공고 제2026-2590호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····· 10
○ 파주시 공고 제2026-2603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 11

회 람									

발 행 : 파 주 시

파주시 공고 제2026-2572호

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포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포상 조례

2. 개정이유

ㅇ 포상 취소 절차를 신설하여 포상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,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 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규칙과의 정합성을 위해 모범공무원 관련 사항 정비(안 제4조, 제8조)

나. 정확한 명칭 표기를 위한 일부 용어 정비(안 제11조)

다. 포상 취소 사유 및 절차를 신설함(안 제16조)

라. 포상 분실 등으로 추가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발급하는 「포상수여 사실확인서」에 담당자 작성란을 추가함(안 별지 제6호서식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2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행정지원과 인사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행정지원과 인사팀(우 10932)

○ 전화 : 031-940-4121 / 팩스 031-940-4109 / 이메일 tml6524@korea.kr

파주시 공고 제2026-2577호

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

2. 개정이유

ㅇ 모범공무원 표창 주기를 탄력화하고, 심사 시 감사부서의 결격사유 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모범공무원 표창 주기 조정 (안 제2조제2항제1호)

나. 권위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행정 용어 정비(안 제4조제2항)

다. 표창 제외 대상 검토 절차 마련(안 제4조제3항 신설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2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행정지원과 인사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행정지원과 인사팀(우 10932)

○ 전화 : 031-940-4121 / 팩스 031-940-4109 / 이메일 tml6524@korea.kr

파주시 공고 제2026-2578호

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

2. 개정이유

○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공무원을 탄력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, 일반 포상 제외대상과 모범공무원 포상 제외대상 간 중복 규정을 정비함

3. 주요내용

가. 모범공무원 선발 인원 기준 정비(안 제6조제1항)

나. 모범공무원 제외 대상(결격사유) 중복 조항 정비 (안 제10조)

다. 권위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행정 용어 정비(안 전반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2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행정지원과 인사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행정지원과 인사팀(우 10932)

○ 전화 : 031-940-4121 / 팩스 031-940-4109 / 이메일 tml6524@korea.kr

파주시 공고 제2026-2582호

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
나. 예고기간: 2026. 10. 2. ~ 2026. 10. 23.(21일간)
다. 예고방법: 게시판에 공고,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
2026년 9월 30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중 과다한 경쟁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불합리한 사업 활동 제한 규제를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구 수정(안 제4조)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일부 용어 개선(안 제2조, 제6조 ~ 제8조, 제11조, 제14조, 제16조, 제18조)

4. 자치법규안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3일까지(21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・우편・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・주소・생년월일・연락처・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도로건설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)940-4641 / Fax 031)940-4649 / 이메일 7seung7@korea.kr

파주시 공고 제2026-2587호

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

「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「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」

2. 개정이유

○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추진하며 「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자립·자활을 지원하고 있음.

○ 그러나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, 이후 추가적인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 지원 근거가 상실됨.

○ 이에 성매매집결지 해체가 공식화될 때까지 자활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, 해당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종전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(안 부칙(조례 제1929호) 제2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2일까지(20일 이상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○ 자치법규정보시스템(http://www.elis.go.kr) '입법예고'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정비TF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[우 10932]

○ 전화 : 031-940-8660 / 팩스 031-940-4419 / 이메일 kgh993@korea.kr

파주시공고 제2026-2589호

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

2. 개정이유

ㅇ 「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」 개정에 따라 서류전형 심사위원 위촉 기준 및 자격증 관련 사항 정비

3. 주요내용

ㅇ 서류전형 시험위원의 외부위원 위촉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위촉 기준을 변경함(안 제12조)

ㅇ 현행 실정에 맞지 않는 우선임용 규정을 삭제함(안 제24조)

ㅇ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('23.～'25.)에 따른 자격증 통합 및 명칭 현행화(안 별표 5의2, 별표 6, 별표 7, 별표 7의4)

ㅇ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(류)에서 사회복지직·의료기술직 삭제(안 별표 7의4)

ㅇ 법령명 띄어쓰기와 약칭 등 인용 표기를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함(안 전반)

4. 개정규칙안 : 별첨

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란에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2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행정지원과 인사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행정지원과 인사팀(우 10932)

○ 전화 : 031-940-4126 / 팩스 031-940-4109 / 이메일 doevthing@korea.kr

파주시 공고 제2026-2591호

파주시 군부대 교류·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군부대 교류·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군부대 교류·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○ 국방정책 변화에 대한 파주시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공공사업 관련 군 작전성 검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·협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안보자문관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문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 등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, 제4조의2제1항)

나. 평화안보자문관의 자격요건 단서조항 신설(안 제4조의2제2항)

다. 평화안보자문관의 임기 변경(안 제4조의2제3항)

라. 평화안보자문관의 역할 명확화(안 제4조의2제4항)

마. 평화안보자문관의 해촉 근거 신설(안 제4조의2제6항)

바.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등(안 제7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2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・우편・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・주소・생년월일・연락처・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도시계획과 군관협력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도시계획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)940-5811 / Fax 031)940-4709 / 이메일 ganggi@korea.kr

파주시 공고 제2026-2590호

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「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○「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을 신설함으로써 파주시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을 명확히하여 안정적인 노인복지관 운영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노인여가복지시설에 “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”을 신설함(안 별표 1)

나. “파주시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”를 “노인복지시설 시설 사용료”로 개정하고 금액 단위 표기를 통일하는 등 표기 방식을 전반적으로 정비(안 별표2)

다.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이 필요한 용어를 정비“를 정비(안 별지 서식)

- 법인등기부등본 → 법인등기사사항증명서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2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・우편・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・주소・생년월일・연락처・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)940-4401 / Fax 031)940-4409 / 이메일bj538@korea.kr

파주시 공고 제2026-2603호

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

2. 개정이유

○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통합 권고에 따라 유사 관련 조례를 통합·정비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 ~ 제4조)

나.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 ~ 제10조)

다.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 ~ 제14조)

라.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5조 ~ 제18조)

마.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9조 ~ 제31조)

바.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추진(안 제32조 ~ 제34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2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・우편・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・주소・생년월일・연락처・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도시계획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)940-5371 / Fax 031)940-4709 / 이메일 bogi2001@korea.kr